

## 독일의 통신감청제도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국가송무과

### I. 개요

독일의 통신감청은 형사소송법(StVO: Strafprozessordnung) 제100a조와 제100b조를 통해 규정되고 있다. 제100a조는 통신감청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b조는 통신감청의 절차와 기한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a조에 따른 통신감청제도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독일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 및 전신비밀(Fernmeldegeheimnis)의 보호(독일 기본법 제10조)와 일반적 인격권(동법 제2조)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독일 형사소송법은 통신감청 외에도 주거지 내에서의 비공개대화의 도청(제100c조, 100d조), 주거지 외부에서의 비공개대화의 도청(제100f조), 통신기록의 수집(제100g조) 등을 규정

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통신감청제도(제100a조, 제100b조)로 주제를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II. 독일의 통신감청의 대상과 요건

#### 1. 감청의 대상(제100a조 1항)

독일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제3조 22호 및 23호에 따르면 감청의 대상이 되는 통신이란 전자적 시그널 또는 광학적 시그널을 발송, 중계, 수신,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 내지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림, 대화, 음성 등의 형태로 특정한 내용을 발송, 중계, 수신하는 기술적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유·무선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그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대화에 대한 감



1) BGH 27, 355, 357; BGH 31, 296, 298.

청은 이 법률규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sup>2)</sup>

## 2. 중대한 범죄의 혐의(제100a조 1항 1호)

제100a조 1항<sup>3)</sup>은 당사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통신을 감시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감청의 요건으로서 “어떤 자가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를 범했거나, 미수를 처벌하는 경우 그 중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거나, 다른 범죄행위를 통해서 그 중범죄를 예비하였다는 혐의가 일정한 사실에 근거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의 혐의는 특정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혐의” 이어야 하며, 불명확한 근거나 단순한 추정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sup>4)</sup> 또한 동 규정은 통신감청의 요건으로 “중대한 범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제100c조 1항에 따른 주거지 내에서의 비공개대화의 도청의 요건인

“특별히 중한 범죄”와 제100g조 1항에 따른 통신기록의 수집 요건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법정형이 최저 5년 이상인 범죄들을 의미한다. 제100a조 2항에 열거된 범죄목록들은 모두 법정형이 최저 5년 이상인 범죄들이다.

제100a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1. 형법에 따른 범죄<sup>5)</sup>

- a) 형법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4조 내지 제86조, 제87조 내지 제89a조, 제94조 내지 제100a조의 평화교란죄, 내란죄, 민주적 법치국가 위태화죄, 간첩죄 및 외환의 죄
- b) 제108e조의 의원매직죄



2) 이러한 사례로 BGH 31, 296 판결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의 전화를 감청하다가, 피의자가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아내와 나눈 대화를 엿듣게 된 경우, 경찰은 이 대화내용을 수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 100a (1) Auch ohne Wissen der Betroffenen darf die Telekommunikation überwacht und aufgezeichnet werden, wenn

1.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begründen, dass jemand als Täter oder Teilnehmer eine in Absatz 2 bezeichnete schwere Straftat begangen, in Fällen, in denen der Versuch strafbar ist, zu begehen versucht, oder durch eine Straftat vorbereitet hat,
2. die Tat auch im Einzelfall schwer wiegt und
3.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Beschuldigten auf andere Weise wesentlich erschwert oder aussichtslos wäre.

4) BVerfGE 113, 348; NJW 05, 2603, 2610.

5) § 100a (2) Schwere Straftaten im Sinne des Absatzes 1 Nr. 1 sind:

1. aus dem Strafgesetzbuch:
  - a) Straftaten des Friedensverrats, des Hochverrats und der Gefähr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sowie des Landesverrats und der Gefährdung der äußeren Sicherheit nach den §§ 80 bis 82, 84 bis 86, 87 bis 89a, 94 bis 100a,
  - b) Abgeordnetenbestechung nach § 108e,

- c) 제109d조 내지 제109h조의 국방에 대한 죄
- d) 제129조 내지 제130조 공공질서에 대한 죄
- e) 제146조 내지 제151조 및 제152조와 관련된 제146조 내지 제151조, 제152a조 3항과 제152b조 1항 내지 4항에 따른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
- f) 제176a조, 제176b조, 제177조의 2항 2호, 제179조 5항 2호에 해당하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죄
- g) 제184b조 1항 내지 3항, 제184c조 3항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취득, 소지죄
- h)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모살죄 및 고살죄
- i) 제232조 내지 제233a조, 제234조, 제234a조, 제239a조, 제239b조에 따른 개

- 인의 자유에 대한 죄
- j) 제244조 1항 2호에 따른 범죄단체구성 절도죄와 제244a조에 따른 중범죄단체구성절도죄
- k) 제249조 내지 제255조에 따른 강도 및 공갈의 죄
- l) 제260조 및 제260a조에 따른 영업적 장물취득죄, 범죄단체구성 장물취득죄, 영업적 범죄단체구성 장물취득죄
- m) 제261조 1항, 2항, 4항에 따른 자금세탁 및 불법취득재산가치의 은닉죄
- n) 제263조 3항 2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및 제263조 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기죄 및 컴퓨터 사기죄, 제263조 2항과 관련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c) Straftaten gegen die Landesverteidigung nach den §§ 109d bis 109h,
- d) Straftaten gegen die öffentliche Ordnung nach den §§ 129 bis 130,
- e) Geld- und Wertzeichenfälschung nach den §§ 146 und 151,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152, sowie nach § 152a Abs. 3 und § 152b Abs. 1 bis 4,
- f)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in den Fällen der §§ 176a, 176b, 177 Abs. 2 Nr. 2 und des § 179 Abs. 5 Nr. 2,
- g) 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kinder- und jugendpornographischer Schriften nach § 184b Abs. 1 bis 3, § 184c Abs. 3,
- h) Mord und Totschlag nach den §§ 211 und 212,
- i) Straftaten gegen die persönliche Freiheit nach den §§ 232 bis 233a, 234, 234a, 239a und 239b,
- j) Bandendiebstahl nach § 244 Abs. 1 Nr. 2 und schwerer Bandendiebstahl nach § 244a,
- k) Straftaten des Raubes und der Erpressung nach den §§ 249 bis 255,
- l) gewerbsmäßige Hehlerei, Bandenhehlerei und gewerbsmäßige Bandenhehlerei nach den §§ 260 und 260a,
- m) Geldwäsche und Verschleierung unrechtmäßig erlangter Vermögenswerte nach § 261 Abs. 1, 2 und 4,
- n) Betrug und Computerbetrug unter den in § 263 Abs. 3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und im Falle des § 263 Abs. 5,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263a Abs. 2,

- o) 제264조 2항 2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리고 제263조 5항과 관련하여 제264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조금 사기죄
- p) 제267조 3항 2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및 제267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문서위조죄, 제268조 5항 또는 제269조 3항과 관련되는 경우 및 제275조 2항과 제276조 2항에 따른 문서위조죄도 포함한다.
- q) 제283a조 2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파산죄
- r) 제298조에 규정된, 제300조 2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그리고 제299조에 규정된 경쟁위반의 죄

- s) 제306조 내지 제306c조, 제307조 1항 내지 3항, 제308조 1항 내지 3항, 제309조 1항 내지 4항, 제310조 1항,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3항, 제315b조 3항 및 제316a조, 제316c조에 해당하는 공공에 위해가 되는 죄
- t) 제332조와 제334조의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

## 2. 공과금법에 따른 범죄<sup>6)</sup>

- a) 제370조 3항 2문 5호의 요건에 따른 탈세
- b) 제373조에 따른 영업적, 강제적, 조직적 밀수
- c) 제374조 2항의 조세장물

## 3. 의약품법에 따른 범죄<sup>7)</sup>

- 제95조 3항 2문 2호 b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95조 1항 2a호에 의한 범죄



- o) Subventionsbetrug unter den in § 264 Abs. 2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und im Falle des § 264 Abs. 3 in Verbindung mit § 263 Abs. 5,
  - p) Straftaten der Urkundenfälschung unter den in § 267 Abs. 3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und im Fall des § 267 Abs. 4,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268 Abs. 5 oder § 269 Abs. 3, sowie nach § 275 Abs. 2 und § 276 Abs. 2,
  - q) Bankrott unter den in § 283a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 r) Straftaten gegen den Wettbewerb nach § 298 und, unter den in § 300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nach § 299,
  - s) gemeingefährliche Straftaten in den Fällen der §§ 306 bis 306c, 307 Abs. 1 bis 3, des § 308 Abs. 1 bis 3, des § 309 Abs. 1 bis 4, des § 310 Abs. 1, der §§ 313, 314, 315 Abs. 3, des § 315b Abs. 3 sowie der §§ 316a und 316c,
  - t)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nach den §§ 332 und 334,
- 6) § 100a (2) 2. aus der Abgabenordnung:
- a) Steuerhinterziehung unter den in § 370 Abs. 3 Satz 2 Nr. 5 genannten Voraussetzungen,
  - b) gewerbsmäßiger, gewaltsamer und bandenmäßiger Schmuggel nach § 373,
  - c) Steuerhehlerei im Falle des § 374 Abs. 2,
- 7) § 100a (2) 3. aus dem Arzneimittelgesetz:
- Straftaten nach § 95 Abs. 1 Nr. 2a unter den in § 95 Abs. 3 Satz 2 Nr. 2 Buchstabe b genannten Voraussetzungen,

## 4. 망명절차법에 따른 범죄<sup>9)</sup>

- a) 제84조 3항에 따른 불법적인 망명신청의 유인
- b) 제84a조에 따른 영업적, 조직적으로 행하는 불법 망명신청의 유인

## 5. 외국인체류법에 따른 범죄<sup>9)</sup>

- a) 제96조 2항에 따른 외국인의 밀입국
- b) 제97조의 사망의 결과를 낳은 밀입국과 영업적이고 조직적인 밀입국

## 6. 대외경제법에 따른 범죄<sup>10)</sup>

- 대외경제법 제34조 1항 내지 6항의 범죄

## 7. 마약법에 따른 범죄<sup>11)</sup>

- a) 제29조 3항 2문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

- b) 제29a조, 제30조 1항 1호, 2호, 4호 및 제30a조와 제30b조에 따른 범죄

## 8. 마약원료감시법에 따른 범죄<sup>12)</sup>

- 제19조 3항 2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19조 1항에 따른 범죄

## 9. 전쟁무기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sup>13)</sup>

- a) 제19조 1항 내지 3항, 제20조 1항과 2항에 따른 범죄, 제20a조 1항 내지 3항에 따른 범죄 및 제21조와 관련한 각각의 범죄
- b) 제22a조 1항 내지 3항의 범죄

## 10. 국제형법에 따른 범죄<sup>14)</sup>

- a) 제6조의 인종청소
- b) 제7조의 인간존엄에 대한 범죄



8) § 100a (2) 4. aus dem Asylverfahrensgesetz:

- a) Verleitung zur missbräuchlichen Asylantragstellung nach § 84 Abs. 3,
- b) gewerbs- und bandenmäßige Verleitung zur missbräuchlichen Asylantragstellung nach § 84a,

9) § 100a (2) 5. aus dem Aufenthaltsgesetz:

- a) Einschleusen von Ausländern nach § 96 Abs. 2,
- b) Einschleusen mit Todesfolge und gewerbs- und bandenmäßiges Einschleusen nach § 97,

10) § 100a (2) 6. aus dem Außenwirtschaftsgesetz: Straftaten nach § 34 Abs. 1 bis 6,

11) § 100a (2) 7. aus dem Betäubungsmittelgesetz:

- a) Straftaten nach einer in § 29 Abs. 3 Satz 2 Nr. 1 in Bezug genommenen Vorschrift unter den dort genannten Voraussetzungen,
- b) Straftaten nach den §§ 29a, 30 Abs. 1 Nr. 1, 2 und 4 sowie den §§ 30a und 30b,

12) § 100a (2) 8. aus dem Grundstoffüberwachungsgesetz:

- Straftaten nach § 19 Abs. 1 unter den in § 19 Abs. 3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13) § 100a (2) 9. aus dem Gesetz über die Kontrolle von Kriegswaffen:

- a) Straftaten nach § 19 Abs. 1 bis 3 und § 20 Abs. 1 und 2 sowie § 20a Abs. 1 bis 3,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21,
- b) Straftaten nach § 22a Abs. 1 bis 3,

14) § 100a (2) 10. aus dem Völkerstrafgesetzbuch:

- a) Völkermord nach § 6,

- c) 제8조 내지 제12조의 전쟁범죄
- 11. 무기법에 따른 범죄<sup>15)</sup>
  - a) 제51조 1항 내지 3항에 따른 범죄
  - b) 제52조 1항 1호, 2호 c와 d, 5항 및 6항의 범죄

### 3. 보충성의 원칙

감청의 요건에 따르면 감청대상 범죄는 제100a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이 범죄가 개별 사안에서도 중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제100a조 1항 2호).

또한 통신감청은 “감청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관계의 조사나 피의자 거주지의 수사가 본질적으로 어렵거나 가망이 없을 경우”에만 허용된다(제100a조 1항 3호).

### 4. 감청의 대상자

감청의 대상자는 우선 피의자이며, 피의자 외에도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 즉 피의자를 위해

또는 피의자에 의해 특정한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전달할 것을 수락한 사람 또는 피의자가 그의 통신접속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수락한 사람에 대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제100a조 3항).<sup>16)</sup> 다시 말해 피의자가 관련자의 전화를 사용하고 있거나 관련자들이 피의자를 위해 정보를 빼내어 피의자에게 전달한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가 없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감청도 허용된다는 뜻이다. 이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7)</sup>

### 5. 사생활의 핵심적 영역에 대한 보호

제100a조의 4항은 제1항의 조치를 통해 얻은 사실들이 오직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적 영역으로부터 나온 사실들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가 허용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적 영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들은 사용될 수 없다는 점 및 이에 대한 기록은 즉시 삭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득과 삭제



- b)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nach § 7,
  - c) Kriegsverbrechen nach den §§ 8 bis 12,
- 15) § 100a (2) 11. aus dem Waffengesetz:
- a) Straftaten nach § 51 Abs. 1 bis 3,
  - b) Straftaten nach § 52 Abs. 1 Nr. 1 und 2 Buchstabe c und d sowie Abs. 5 und 6.
- 16) §100a (3) Die Anordnung darf sich nur gegen den Beschuldigten oder gegen Personen richten, von denen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anzunehmen ist, dass sie für den Beschuldigten bestimmte oder von ihm herrührende Mitteilungen entgegennehmen oder weitergeben oder dass der Beschuldigte ihren Anschluss benutzt.
- 17) BVerfGE 30, 22.

의 사실은 서류에 의해 증명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입법태도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sup>19)</sup>을 반영한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적 영역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 왔었으며,<sup>20)</sup> 또한 제100c조에 따른 주거지 내에서의 비공개대화의 도청과 관련한 결정<sup>21)</sup>에서도 이러한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를 요구한 바 있다. 현행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c조 역시 이러한 결정에 따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대한 도청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동조 4항).

### III. 독일의 통신감청의 절차 및 기한연장

#### 1. 감청명령의 절차와 권한

제100a조에 따른 감청명령은 검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제100b조 1항 1문).<sup>22)</sup>



18) (4) Liege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für die Annahme vor, dass durch eine Maßnahme nach Absatz 1 allein Erkenntnisse aus de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erlangt würden, ist die Maßnahme unzulässig. Erkenntnisse aus de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die durch eine Maßnahme nach Absatz 1 erlangt wurden, dürfen nicht verwertet werden. Aufzeichnungen hierüber sind unverzüglich zu löschen. Die Tatsache ihrer Erlangung und Löschung ist aktenkundig zu machen.

19) BVerfGE 113, 348; NJW 05, 2603, 2611.

20) BVerfGE 6, 32, 41; 27, 1, 6; 32, 373, 379; 34, 238, 245; 80, 367, 373; 109, 279.

21) BVerfGE 109, 279.

22) § 100b (1) Maßnahmen nach § 100a dürfen nur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urch das Gericht angeordnet werden. Bei Gefahr im Verzug kann die Anordnun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getroffen werden. Soweit die Anordnung der Staatsanwaltschaft nicht binnen drei Werktagen von dem Gericht bestätigt wird, tritt sie außer Kraft. Die Anordnung ist auf höchstens drei Monate zu befristen. Eine Verlängerung um jeweils nicht mehr als drei Monate ist zulässig, soweit die Voraussetzungen der Anordn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wonnenen Ermittlungsergebnisse fortbestehen.

#### 2. 감청기한의 연장 및 종료

감청의 기한은 최대 3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한 한에서 반복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역시 최대 3개월까지이며, 연장은 기존 감청을 통해 확보된 수사결과를 검토하여 감청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제100b조 1항 4, 5문).

감청의 연장은 법원에게 결정권한이 있다. 감청 연장의 경우도 당연히 제100b조 1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감청결과 및 그 외의 새로운 수사결과에 대한 인지 없이는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새로운 결정까지 발생한 모든 전체적인 사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받지 못한다면 법원은 명령 전제조건인 검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을 거부하여야 한다.<sup>23)</sup>

감청 기간의 계산은 수사기관이 감청을 시작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감청명령이 내

려진 때부터 계산되며,<sup>24)</sup> 명령의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근거로 취해진 조치들이 지체 없이 종료되어야 한다. 조치를 종료한 후 명령을 내린 법원에 그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제100b조 4항).<sup>25)</sup>

### 3. 긴급 감청명령

일반적인 감청명령의 권한은 법원에 있지만,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스스로 긴급 감청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100b조 1항 2문). 이 긴급명령은 3일 안에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바로 효력이 상실된다(제100b조 1항 3문). 한편 긴급 감청명령이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감청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들은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sup>26)</sup>

## 4. 명령 절차

### 1) 명령의 집행

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명령의 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제100b조 2항).<sup>27)</sup>

1. 가능한 경우, 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전화번호 또는 감시될 접속장치의 다른 식별번호 내지는 특정한 사실에 의해 동시에 다른 단말기에 속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단말기의 다른 식별번호
3. 감청 조치의 종류와 범위 및 기간 및 종료시점의 명시

### 2) 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협력의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모든 자는 이러한 명령에 기초하여 법원, 검찰 및 경



23) Löwe-Rosenberg, StPO-Großkommentar, 25. Aufl., § 100b, Rn. 18.

24) BGH 44, 243.

25) § 100b (4) Liegen die Voraussetzungen der Anordnung nicht mehr vor, so sind die auf Grund der Anordnung ergriffenen Maßnahmen unverzüglich zu beenden. Nach Beendigung der Maßnahme ist das anordnende Gericht über deren Ergebnisse zu unterrichten.

26) Meyer-Goßber, Strafprozessordnung Kommentar, 52. Aufl., München 2009, S. 369.

27) § 100b (2) Die Anordnung ergeht schriftlich. In ihrer Entscheidungsformel sind anzugeben:

1. soweit möglich, der Name und die Anschrift des Betroffenen, gegen den sich die Maßnahme richtet,
2. die Rufnummer oder eine andere Kennung des zu überwachenden Anschlusses oder des Endgerätes, sofern sich nicht aus bestimmten Tatsachen ergibt, dass diese zugleich einem anderen Endgerät zugeordnet ist,
3. Art, Umfang und Dauer der Maßnahme unter Benennung des Endzeitpunktes.

촬영무에 종사하는 수사관(법원조직법 제152조)에게 제100a조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보호조치의 여부나 보호조치의 범위는 통신법과 통신감시규정에 의해 규정된다. 제95조 2항이 준용된다(제100b조 3항).<sup>28)</sup>

### 3) 보고

주(州) 및 연방검찰총장은 보고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자신의 관할영역 내에서 내려진 제100a조에 따른 조치들에 대해서 매년 연방법무부에 보고를 한다. 연방법무부는 보고연도에 연방차원에서 내려진 이들 조치의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제100b조 5항).<sup>29)</sup>

이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제100b조 6항).<sup>30)</sup>

1. 제100a조 제1항에 의한 조치들이 행하여진 절차의 횟수
2. 초동명령 및 연장명령, 그리고 일반·이동·인터넷 통신으로 구분되는 제100a조 제1항에 따른 감시명령의 횟수
3. 제100a조 제2항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른 명령의 기초가 된 원인범죄

주 현 경

(독일주재 외국법제조사원)



28) § 100b (3) Auf Grund der Anordnung hat jeder, der Telekommunikationsdienste erbringt oder daran mitwirkt, dem Gericht, der Staatsanwaltschaft und ihren im Polizeidienst tätigen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die Maßnahmen nach § 100a zu ermöglichen und die erforderlichen Auskünfte unverzüglich zu erteilen. Ob und in welchem Umfang hierfür Vorkehrungen zu treffen sind, bestimmt sich nach dem Telekommunikationsgesetz und der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sverordnung. § 95 Abs. 2 gilt entsprechend.

29) § 100b (5) Die Länder und der Generalbundesanwalt berichten dem Bundesamt für Justiz kalenderjährlich jeweils bis zum 30. Juni des dem Berichtsjahr folgenden Jahres über in ihrem Zuständigkeitsbereich angeordnete Maßnahmen nach § 100a. Das Bundesamt für Justiz erstellt eine Übersicht zu den im Berichtsjahr bundesweit angeordneten Maßnahmen und veröffentlicht diese im Internet.

30) § 100b (6) In den Berichten nach Absatz 5 sind anzugeben:

1. die Anzahl der Verfahren, in denen Maßnahmen nach § 100a Abs. 1 angeordnet worden sind;
2. die Anzahl der Überwachungsanordnungen nach § 100a Abs. 1, unterschieden nach
  - a) Erst- und Verlängerungsanordnungen sowie
  - b) Festnetz-, Mobilfunk- und Internettelekommunikation;
3. die jeweils zugrunde liegende Anlassstrafat nach Maßgabe der Unterteilung in § 100a Abs. 2.